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업주체와 수급인·하수급인 간의 하자 분쟁도 처리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사건 추가(안 제11조)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사업주체와 수급인·하수급인간의 시공상 하자여부 분쟁 및 하자의 책임범위·손해배

상 분쟁 추가

나. 하자 사건 신청대상 추가(안 제13조제2항)

- 사업주체·수급인 및 하수급인간,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간에 발생한 하자 사건에 대한 신청자를 당사자로 규정

다. 출석 요구대상 추가(안 별지 제13호 서식)

- 출석요구서 유의사항 난의 출석요구 대상에 수급인, 하수급인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개정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4897, 3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업주체·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시공 상의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업주체·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 및 손해 배상을 다투는 경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또는 사업주체·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신청을 받는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구분)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를 심사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분쟁을 조정 및 재정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생략)</p> <p>제13조(사건의 신청기준)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건을 다음 각 호의 자료부터 신청을 받는다. <u><단서 신설></u></p>	<p>제11조(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구분)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4의2. 사업주체·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시공 상의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u></p> <p>5.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4의2. 사업주체·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 및 손해배상을 다투는 경우</u></p> <p>5.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건의 신청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u>다만,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또는 사업주체</u></p>

<p>1.·2. (생 략) ③ ~ ⑤ (생 략)</p>	<p><u>·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신청을 받는다.</u></p> <p>1.·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p>
------------------------------------	---